

2026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 1
재창업지원

Chapter 01 재창업 지원..... 07

01. 재도전응원본부8

02. 성실경영평가제도9

03. 재창업자금 11

04. 재도전성공패키지 14

05. 신용보증기금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15

06. 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16

07.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17

08. 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18

09.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20

10.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22

11.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23

12.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24

13.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재도전 분야) 25

14.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27

Chapter 02 재창업 교육 및 행사..... 29

01.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30

02. 경기 재도전 학교 31

03.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공통 집체교육 33

04. 재도전 사례공모전 34

05.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35

06. 재도전의 날 36

07. 재도전 정책포럼 37

08. 실패콘서트 38

Chapter 03 개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39

1. 신용회복 절차 40

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42

3. 개인워크아웃 43

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45

5. 개인 회생 제도 47

6. 개인 파산·면책 제도 49

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51

Chapter 04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53

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54

2.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56

PART. 2
경영위기지원

Chapter 01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59

01. 구조개선전용자금 60

02.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62

03.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부실징후기업 금융지원 64

04-1.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직접) 66

04-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신탁) 67

04-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동산) 68

05.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유동화]프로그램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69

06. 진로제시컨설팅 70

07. 중소기업 워크아웃 72

08. 워크아웃컨설팅 73

09. 기업 회생 제도 74

10. 간이 회생 제도 76

11. 회생컨설팅 77

12. 신용보증기금 빌드업 프로그램 78

13.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79

Chapter 02 중소기업 사업정리81

01. 중소기업 사업정리 82

02. 사업정리 유의사항 86

03. 사업정리 컨설팅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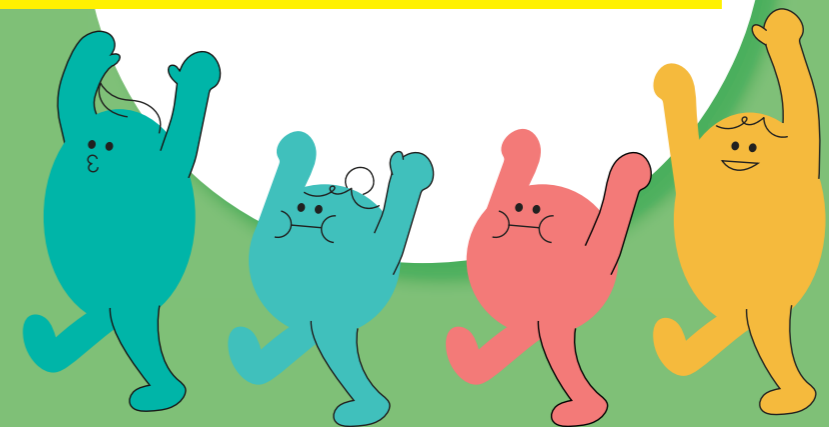
04. 법인기업 파산 제도 89

0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91

2026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ART. 1 재창업지원



- Chapter 01 재창업 지원
- Chapter 02 재창업 교육 및 행사
- Chapter 03 개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 Chapter 04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재창업지원

Chapter 01



1. 재도전지원본부
2.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3. 재창업자금
4. 재도전 성공패키지
5. 신용보증기금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6. 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7.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8. 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9.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10.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11.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12.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13.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재도전 분야)
14.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01 재도전응원본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 : Expand your Challenge, as One
 실패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도전·연대·개척 정신을 대표하는 재도전응원본부 출범

재도전응원본부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전국에 재도전 **문화 확산** 추진, 재도전 과정 **정책까지 지원**을 위해 구성된 민간주도 정부·공공 협업 체계

→ 목적

재도전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새출발 지원

목표 실패가 도전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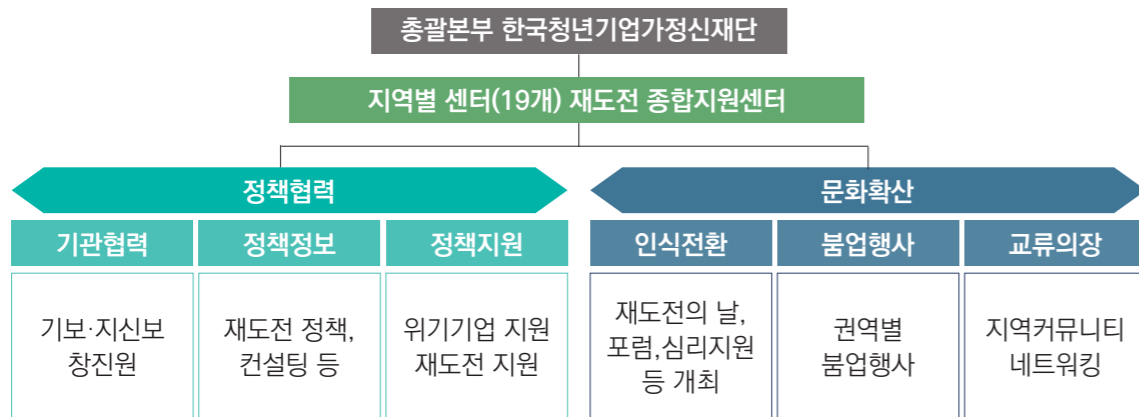
추진방향

- 1 정책지원 체계구축 및 정보전달 강화
- 2 사업 및 기관간 연계를 통한 재도전 정책지원
- 3 재도전 교류 협력 및 역량강화
- 4 재도전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 구성

- 1 총괄본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심 업계, 협단체, 학계 등 참여
- 2 지역센터 : 전국 19곳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중심, 유관기관 협업

【 재도전응원본부 개요도 】



→ 연혁

발대식 개최(25.12.14)

02 성실경영평가 제도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신청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내용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소득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재창업 지원사업

- [중진공] 재창업자금
- [창진원] 재도전성공패키지
- [신·기보] 신복위-재창업자금
- [지자체]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등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 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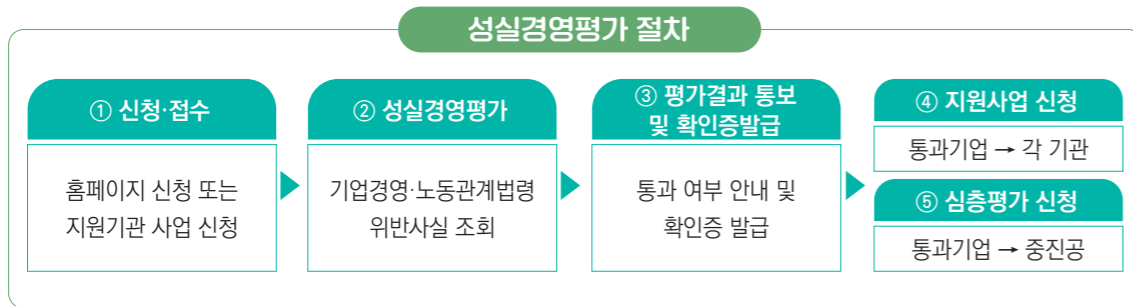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주요 우대혜택

기 관	우대혜택 내용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자금 금리우대(△0.3%p) 및 운전자금 한도우대(5억→10억)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평가 면제 •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기업 인정(별도 평가 트랙)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서류평가 면제(만 39세 이하)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 시 '도덕성평가' 우대
SGI서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
한국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역금융 보증한도(1.5배), 보증료할인(20%)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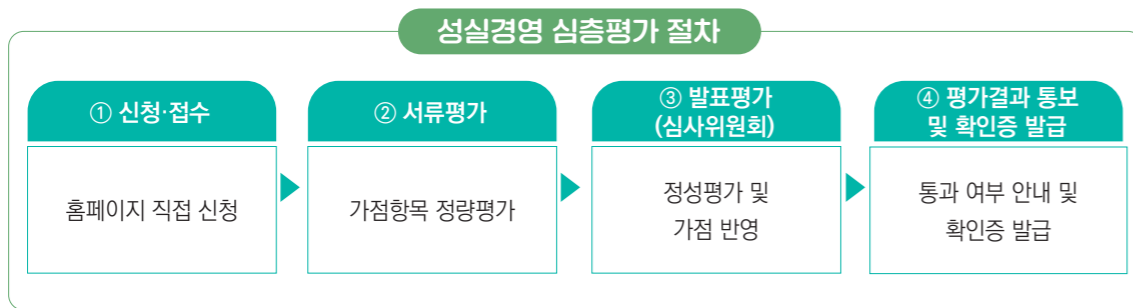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평가

* 통과자는 '성실경영평가 통과 확인증' 발급 (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



(성실경영 심층평가) 서류평가(정량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준비도 등 발표평가

* 통과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발급 (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신청방법**

재도전지원본부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신청

-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생략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2-2130-1450, 1451)

03 재창업자금

폐업이력 등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와 재창업을 도모

➔ **신청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채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신청기간**

'26.1.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규모**

재창업자금 1,000억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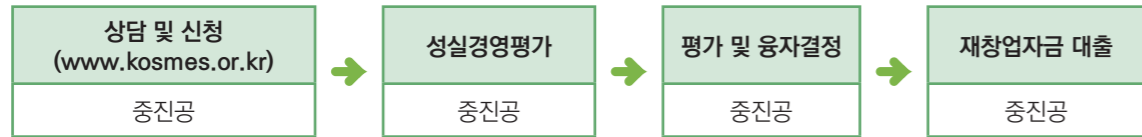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Δ0.3%p)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회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용자 여부 결정 • 용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용자상환금조정형 제외)



꼭 알아주세요!

세금채납중인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 승인 시 대출 가능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자금 상담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신복위 재창업자금〉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업절차 :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정책자금 용자계획공고」 필수 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현황】

지역본부명	소재지	담당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5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10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2013-9831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64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33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26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032-560-2364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28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6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18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031-899-9106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14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20
강원영동지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0, 8층 (임당동, 동아빌딩)	033-649-9373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34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044-860-8310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7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9

04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신청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가 없는자
- **(재창업기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상세 자격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연간 1회(상반기)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및 모집 횟수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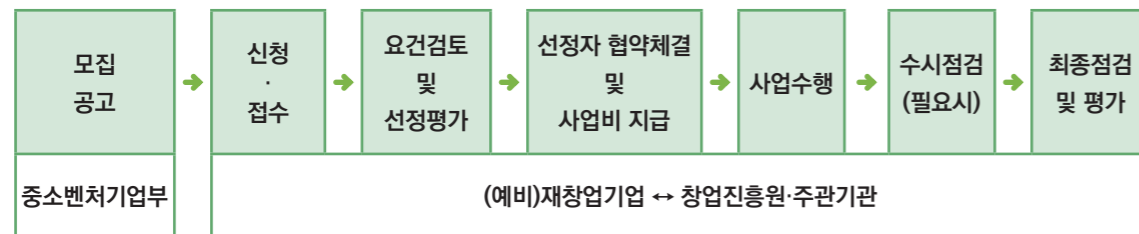
➔ 지원규모

185개사(명)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0.67억원, 최대 1억원),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재창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 사업절차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1984)

05 신용보증기금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신보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거나 신보, 기보, 재단 등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면제된 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신보 단독 프로그램

➔ 신청대상

재도전 회생지원보증,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

- **(재도전 회생지원보증)** 신보에 구상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실제경영자의 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신보에 구상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실제경영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또는 채무조정과 함께 사업 재개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법적변제의무종결기업보증)** 신보, 기보, 재단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신청기간

상시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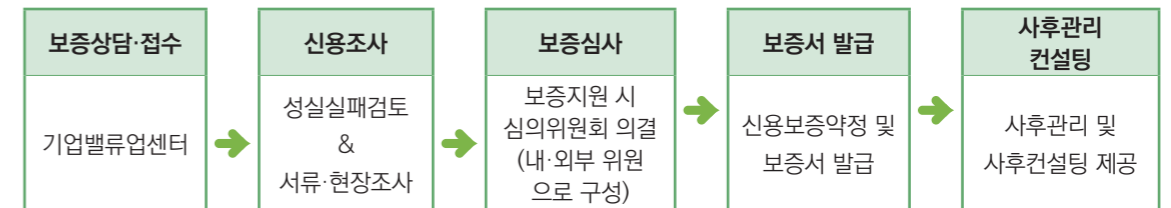
최대 30억원

➔ 지원내용

금융지원(신규보증, 고정보증료율 1.2%*), 비금융지원(컨설팅 등)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을 위한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함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신보 전국 8개 기업밸류업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06 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실패 경험이 있지만 성실하게 경영해온 재창업자들에 대한 특례보증

➔ 신청대상

성실상환자, 성실면제자, 기술혁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성실상환자) 신보 구상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1년 이상 상환한 자가 재창업한 기업
- (성실면제자) 신보에 대한 대내외 채무조정 절차가 완료된 실패법인의 입보면제자가 재창업한 기업
- (기술혁신형) 지식재산권, 기업부설연구소, 신성장동력산업영위 등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

➔ 신청기간

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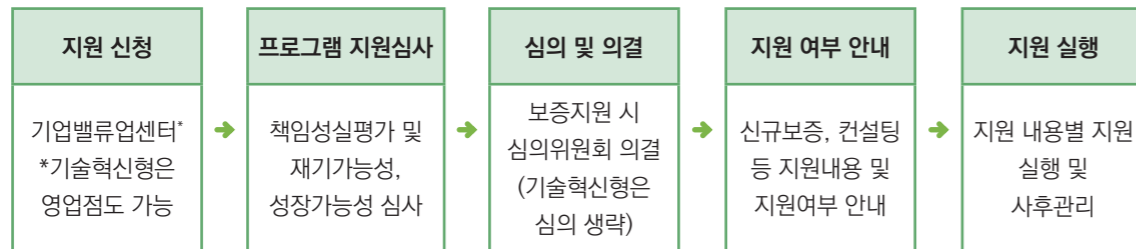
➔ 지원규모

최대 30억원

➔ 지원내용

금융지원(신규보증, 고정보증료율 1.0%), 비금융지원(컨설팅 등)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신보 전국 8개 기업별류업센터를 통해 신청
(기술혁신형은 영업점도 가능)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07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성실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 보증 지원

➔ 신청대상

- 기보 구상채무자로서 변제 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주(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기지원보증 신청 제외 대상
 - 휴업중인 기업,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기보 외에 다른 기관에서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신청(지원) 제외 대상

- ① 휴업중인 기업
- ② 재도전 경영주 또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이 기금 이외 다른 기관에서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보증심사운용요령 적용기준」제13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연중 수시(한도 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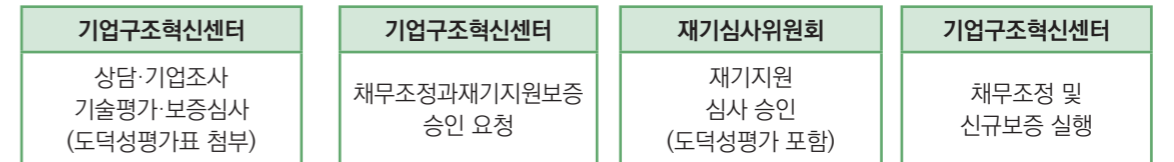
➔ 지원규모

최대 30억원(운전 15억원)

➔ 지원내용

- 채무조정: 대위변제후 1년경과 및 상각한 채권은 최대 75% 감면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사업절차



➔ 신청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신청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

08 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보, 신보, 재단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 등을 통해 법적 변제 의무가 종결된
재도전·재창업자에 대하여 신규 보증 지원

➔ 신청대상

- 파산면책 확정자, 회생절차 변제 완료자, 신복위 채무조정 변제 완료자, 채무조정 절차가 완료된 실패기업의 입보 면제자 등 법적 변제 책임이 소멸한 채무조정 완료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기간

연중 수시(한도 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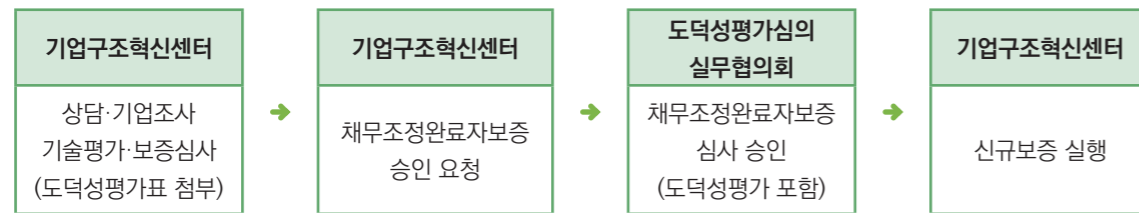
➔ 지원규모

관련 제규정에 따름

➔ 지원내용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사업절차



➔ 신청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혁신센터 현황]

지역본부명	소재지	담당 전화번호
경남울산기업구조혁신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 9층	051-330-1500
광주기업구조혁신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80, 6층	062-360-4689
대구기업구조혁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11층	053-251-5696
대전기업구조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5층	042-610-2255
부산기업구조혁신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 BIFC2 41층	051-601-1900
서울동부기업구조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201호	02-3433-4700
서울서부기업구조혁신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17층	02-881-1611
수원기업구조혁신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9층	031-899-9300
인천기업구조혁신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2층	032-830-5700

09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도모

➔ 신청대상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 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지원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1. 대위변제기업

- (a)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 (b)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1.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연대보증인
2.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2. 법적채무 종결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c)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d)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3. 관리종결기업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지역신보가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4. 채권매각기업

(가)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 (a)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조기)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원금 3회 이상 납입한 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부실우려차주 중 (조기)대위변제 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매각을 완료하고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한 경우
- (b) 부실차주 중 재단이 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원금 3회 이상 납입한 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부실차주 중 대위변제 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매각을 완료하고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한 경우
- (c) 위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나) 캠프 채권매각기업

- (a) 재단이 특수채권을 캠프에 매각한 이후 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b) 재단이 특수채권을 캠프에 매각한 이후 캠프에서 관련채무를 관리종결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c) 위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상시(별도 통보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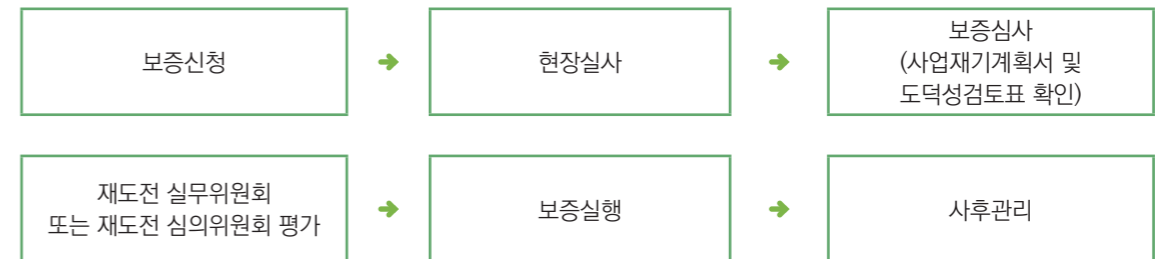
➔ 지원규모

별도 통보시 까지

➔ 지원내용

- **보증한도**: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지역신보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8% 이내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10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재창업자금 용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발급 지원

➔ 신청대상

- 재창업자금 대출기업(대출일 기준 2년 내 신청기업)
 - ※ 단, 다음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대상 제외
-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 기업, 재창업자금 기한의 이익 상실(연체 등으로 만기 전 상환 도래) 된 기업, 서울보증보험(주) 보험 사고자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2년간 기업 당 5억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용 지원
- 입찰, 계약, 차액, 선금금, 하자, 지급(일부) 및 인허가보증보험

➔ 신청방법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지점 통해(☎ 1670-7000) 신청

문의처

서울보증보험(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2-3671-7528, ☎ 055-751-9628)

11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경기도 내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 투자IR 등 역량강화와 사업화지원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

➔ 신청대상

예비 재창업자 또는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 전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신청기간

2026년 2~3월 중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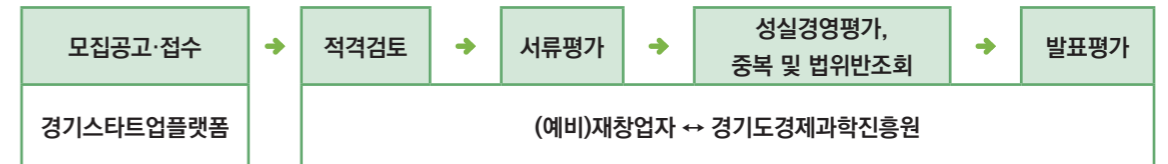
10개사(명)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 **사업화지원금** :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등(최대 30백만원/社)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진단, 교육, 컨설팅, IR, 투자상담회 등
- **스타트업지원센터** : 경영, 판로, 사업화, 자금 등 기업애로 상담

➔ 선정절차



➔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지원팀 (☎ 031-8039-7113)

12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신청대상

- 사업에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 (공통) 공고일 기준 기술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광주광역시 거주자
 - *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및 협약기간 안 광주지역 재창업 가능한 자

➔ 신청기간

2026. 03. 20. ~ 2026. 04. 17. (이메일 접수)

➔ 지원규모

(예비)재창업자 5개사 내외, 최대 21,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지원, 각종 네트워킹 등
 -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제품고도화/고급화, 지재산 확보 지원 등
 - * (사업화지원) 마케팅, 디자인,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 * (자율제안) 기업수요 반영
- 집체교육,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등
 - * (선정기업) 선배창업 기업특강, 그룹형 멘토링, 컨설팅 지원
 - * (우수기업) R&D/비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관리 등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tsyunbok@gjtp.or.kr)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 062-239-9615)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 062-613-4082)

13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재도전 분야)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 신청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다음의 주목적 투자 대상을 만족하는 펀드를 결성하려는 GP

- 다음 ①~⑤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① 폐업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폐업일 기준 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 (타인명의로 재창업** 포함)한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이상) 또는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 ** 타인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실질적인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제외
 - ② 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
-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예시)
 - (정부) 재창업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 (지방정부)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 창업재도전지원사업,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창업재도전 지원사업 등
- ③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또는 신산업 진출 등 목적의 사업구조개편 추진 계획을 입증하는 기업
- ④ '21년도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등 구조개선전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⑤ 기존 운영하던 사업 실패 후 전략·제품·서비스 변경 등 프로젝트 전환을 입증하는 기업(단,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가 실행 이전(계획) 단계에 그치거나, 두 프로젝트 간 차별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제외)

14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 [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부산 지역의 혁신성·성장성 있는 초기 기술 스타트업의 사업화 안착과 스케일업을 지원

< 프로젝트 전환 유형(예시) >

구분	전략	제품·서비스
유형	① 산업 영역 변경 ② 고객군 변경 ③ 수익모델 변경 ④ 유통·접점 채널 변경	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장·축소·전환 ② 기술 전환 ③ 플랫폼 전환

* 기존 프로젝트의 성과(매출 등) 및 실패요인 분석, 프로젝트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 (투자기간 내)해야 하며,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모태펀드와 협의 필요

➔ 신청기간

2026.02.19.(목) ~ 2026.02.26.(목)

➔ 지원규모

1,200억 원

➔ 지원내용

자조합별 100~200억원 내외로 한국모태펀드에서 출자

➔ 사업절차

'26. 4월 이내 선정 예정

➔ 신청방법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or.kr) 내 공고 확인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팀 ☎ 02-2156-2046

➔ 신청대상

창업 3년 이내 부산 기술창업 기업

➔ 신청기간

연 1회(2월 사업공고)

➔ 지원규모

50개사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최대 45백만원),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투자프로그램(투자멘토링, 투자사밋업 등)

➔ 신청절차

구분	① 요건검토	② 서면평가	③ 대면평가
일정	'26. 2. ~ 3.	'26. 3.	'26. 3.
비고	기본요건 검토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신청방법

부산창업포털(<https://www.busanstartup.kr/>)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실 ☎ 051-715-1755

재창업 교육 및 행사

Chapter 2

1.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2. 경기 재도전 학교
3.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공통 집체교육
4. 재도전 사례공모전
5.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6. 재도전의 날
7. 재도전 정책포럼
8. 실패콘서트



01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예비)재창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통해 재창업 역량강화 및 성공률을 제고하여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신청대상

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분야 제한 없음)

➔ 신청기간

7 ~ 8월 중 모집공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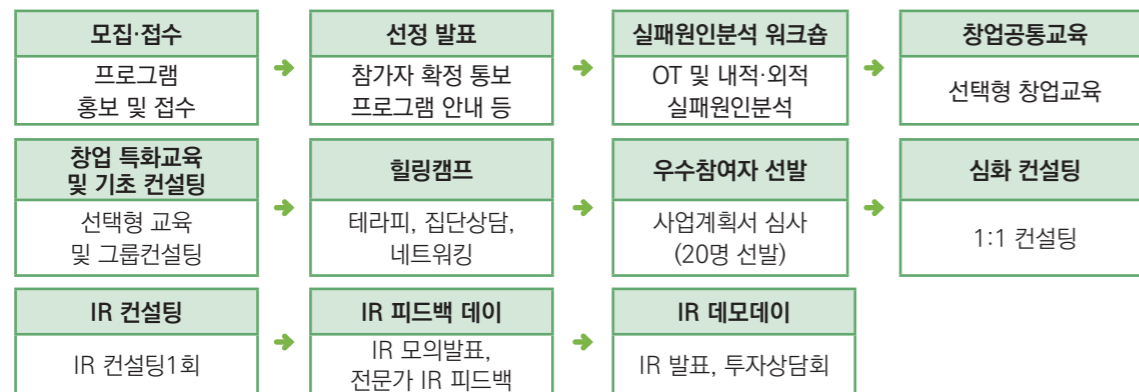
➔ 지원규모

총 150명

➔ 지원내용

- ① 재도전 워크숍 : 자신감 고취를 위한 명사 강연, 실패원인 분석, 소통프로그램
- ② 공통교육 : 선택형 창업교육(재무, 자금조달, BM, 사업계획, 마케팅, 브랜딩, 유통, 조직, 인사, 글로벌 등)
- ③ 특화교육 및 기초 컨설팅 : 고객 분류에 따른 맞춤형 중점 교육, 참여자별 애로사항 및 니즈파악을 통한 그룹 컨설팅
- ④ 힐링캠프 :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의 심리치유, 재창업 동기부여
- ⑤ 심화 컨설팅 : 우수 참여자(20인) 대상 1:1 심화컨설팅
- ⑥ IR 컨설팅 : 우수 참여자(20인) 대상 1:1 IR 컨설팅
- ⑦ IR 피드백 데이 : 우수 참여자(20인) 대상 모의 IR 및 IR 피드백
- ⑧ IR 데모데이 : 우수 참여자(20인) 대상 IR 발표 및 BM 검토, 1:1 투자상담회

➔ 사업절차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전용 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 공고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 9624

02 경기 재도전 학교

취·창업 실패로 상처입고 고립된 경기도민에게 힐링, 심리회복,
실패원인 분석,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평생교육을 통한 재도전 용기 부여

➔ 신청대상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취·창업 재도전 희망자

➔ 신청 및 교육기간

구분	신청기간	교육기간	장소	모집인원	비고
1기	2.25.(수) ~ 3.15.(일)	3.23.(월) ~ 3.27.(금)	(직무)의정부, (힐링)충주	50명	301명 지원 (6.02:1)
2기	4.20.(월) ~ 6.14.(일)	6.29.(월) ~ 7. 3.(금)	(직무)화성, (힐링)충주	50명	동시모집
3기	4.20.(월) ~ 8.9.(일)	8.24.(월) ~ 8.28.(금)	(직무)화성, (힐링)충주	50명	
4기	8월 예정	9월 말 (4박 5일)	경기도 남부 예정	50명	동시모집 예정
5기		10월 중 (4박 5일)	경기도 북부 예정	50명	

※ 4박 5일 합숙 교육에 부담을 가지는 재도전 희망자를 위해 명사 특강 등 재도전의 동기 부여를 위한 '재도전 토크콘서트'
10월 말 추진 예정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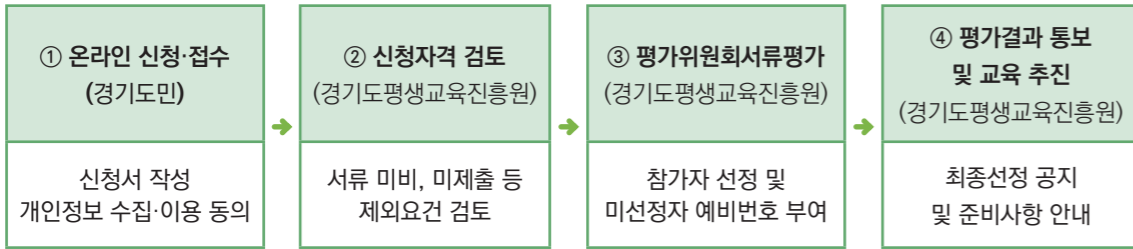
250명(50명/기) 교육, 4박 5일 간 합숙교육 지원

➔ 지원내용

힐링, 심리회복,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재도전 용기부여

- 자신감 회복 및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자기성향 및 강점 분석으로 나를 이해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 하는 워크숍 진행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치유 및 재도전 동기부여로 작은 성취감을 큰성공으로 연결하는 동기 부여
-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가'고도원', 개그맨'고명환' 특강을 통해 실패와 재도전의 간접경험을 통한 재도전 희망메시지 전달
- 취업, 창업 등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및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하는 재도전 선포식 추진
- 경기도 일자리재단(취업), 시장상권진흥원(창업) 협업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 및 수료생에 대한 경기 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연계 지원 등

➔ 사업절차



➔ 신청방법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gill.or.kr>) 내 모집공고 확인 및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및 요건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 상 경기도민) 중 아래 ①, ②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① 공고일 기준 취업(재도전) 희망자
- ② 공고일 기준 창업(재도전) 희망자

※ 프로그램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미수로 처리 및 향후 유사 경기도 정책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발방법 및 기준

재도전 계획서의 도전성, 진정성, 계획의 구체성, 작성의 성실도 (권장 글자수 준수) 심사 후 선정 (대면면접 심사 없음)

문의처

경기도 평생교육과 ☎ 031-8008-451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 031-547-6548

03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공통 집체교육

재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 집체교육

➔ 개최(예정)시기

2026년 6월 ~ 2026년 11월

➔ 개최(예정)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I-PLEX 센터

➔ 주요내용(계획)

- 1차 교육
 - * (기획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PEST 분석 적용 등
 - * (회계역량 강화) 사업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집행 안내
- 2차 교육
 - * (투자유치 IR) 자본조달책 마련을 위한 IR PITCH-DECK 작성 교육
- 3차 교육
 - * (마케팅) 대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방안 모색 등

➔ 참석대상 및 모집규모

예비 재창업 희망자 및 재창업기업 20개사

➔ 신청방법

유선 및 이메일 접수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 062-239-9615

04 재도전 사례공모전

재도전을 통해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부정적 사회 인식개선 및 재기 친화적인 문화확산

➔ 지원내용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 경험 또는 기업경영(조직관리·자금조달·마케팅·R&D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수기를 선정하여 시상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신청대상

전 국민

* 이전 재도전 사례공모전(1~13회) 수상자 신청 불가

➔ 시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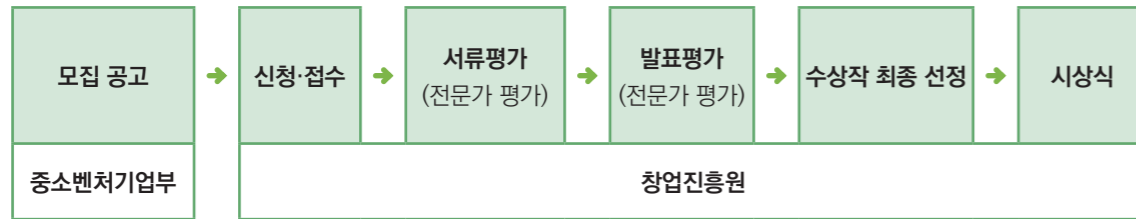
상장 총 5점, 상금 총 11백만원 (예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시상 규모 변동 가능

➔ 신청기간

연간 1회 (2분기 공고 예정)

➔ 진행절차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1984

05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재창업 기업인 및 재창업 지원기관 임직원 등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포상 추진

➔ 신청대상

- **(재창업 기업 부문)** 재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재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재창업자로 공고일 전 기준 재창업 7년 이내)
 - **(재창업 지원 부문)** 재창업 활성화(재창업자 발굴·지원, 연구, 정책개발 등)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재창업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 ※ 상세 자격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www.k-startup.go.kr)

➔ 포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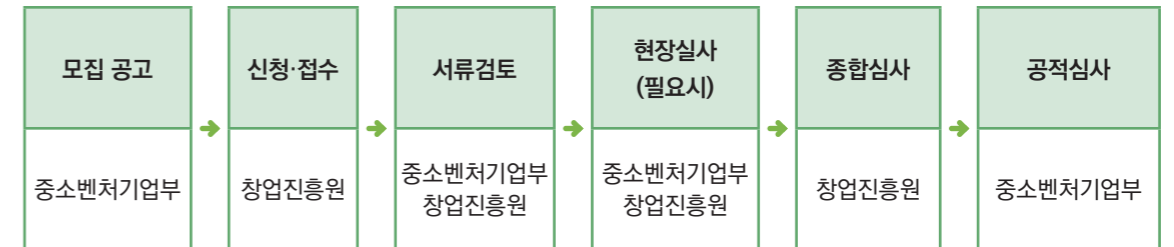
재창업기업 부문 8점, 재창업기업 지원 부문 4점 (예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부문별 포상 규모 변동 가능

➔ 신청기간

연간 1회 (2분기 공고 예정)

➔ 진행절차



➔ 모집방법

- **(재창업 기업 부문)** 공개 모집(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기관 추천
- **(재창업 지원 부문)** 기관 추천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1984

06 재도전의 날

실패와 위기를 극복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재도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

➔ 개최(예정)시기

매년 11월 3주 개최

➔ 개최(예정)장소

미정

➔ 주요내용

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우수사례 발표, 시상식, 네트워킹, IR, 전시 등)
예정

➔ 참석대상

재도전 문화 확산에 관심있는 국민 및 창업생태계 관계자

➔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 044-410-1983, 1992, 1985, 1984)

07 재도전 정책포럼

우리 사회 전반에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창업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교육·금융·심리회복 등 분야별 분절된
재도전 지원정책의 통합을 논의하는 장

➔ 개최(예정)시기

2026년 6월 중 1일

➔ 개최(예정)장소

서울

➔ 주요내용(계획)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 개최

- (기조강연)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주제로 기조강연
- (발제) 재도전과 실패의 정책적 정의 및 통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
- (종합토론) 재도전과 실패의 정책적 정의 통합방안 논의

➔ 참석대상 및 모집규모

정책관계자, 학계, 창업지원 관계자, 재도전 창업가 등 100여 명

➔ 신청방법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www.koef.or.kr) 확인 및 신청



문의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02-6953-2696, 1890)

08 실패콘서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창업가를 만나 실패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축제의 장

➔ 개최(예정)시기 및 장소

- (1차 실패콘서트) 2026년 7월 중 1일 / 서울
- (2차 실패콘서트) 2026년 10월 중 1일 / 미정

➔ 주요내용(계획)

- 실패와 고통의 순간을 용기 있게 극복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의 장 운영
-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여 재도전에 성공한 창업가의 노하우 공유
- (참여형 프로그램) 토크콘서트 이외 재창업 컨설팅, 심리상담 프로그램, 팝업 전시 등

➔ 참석대상 및 모집규모

일반 시민, 재도전·예비 창업가, 청년 및 청소년 등 200여 명 내외

➔ 신청방법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www.koef.or.kr) 확인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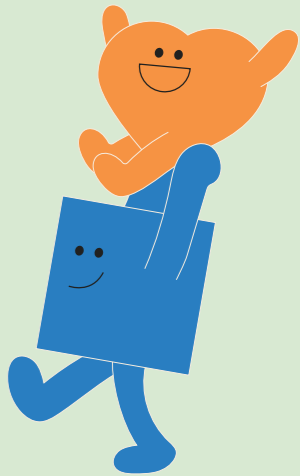
문의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02-6953-2696, 1890)

개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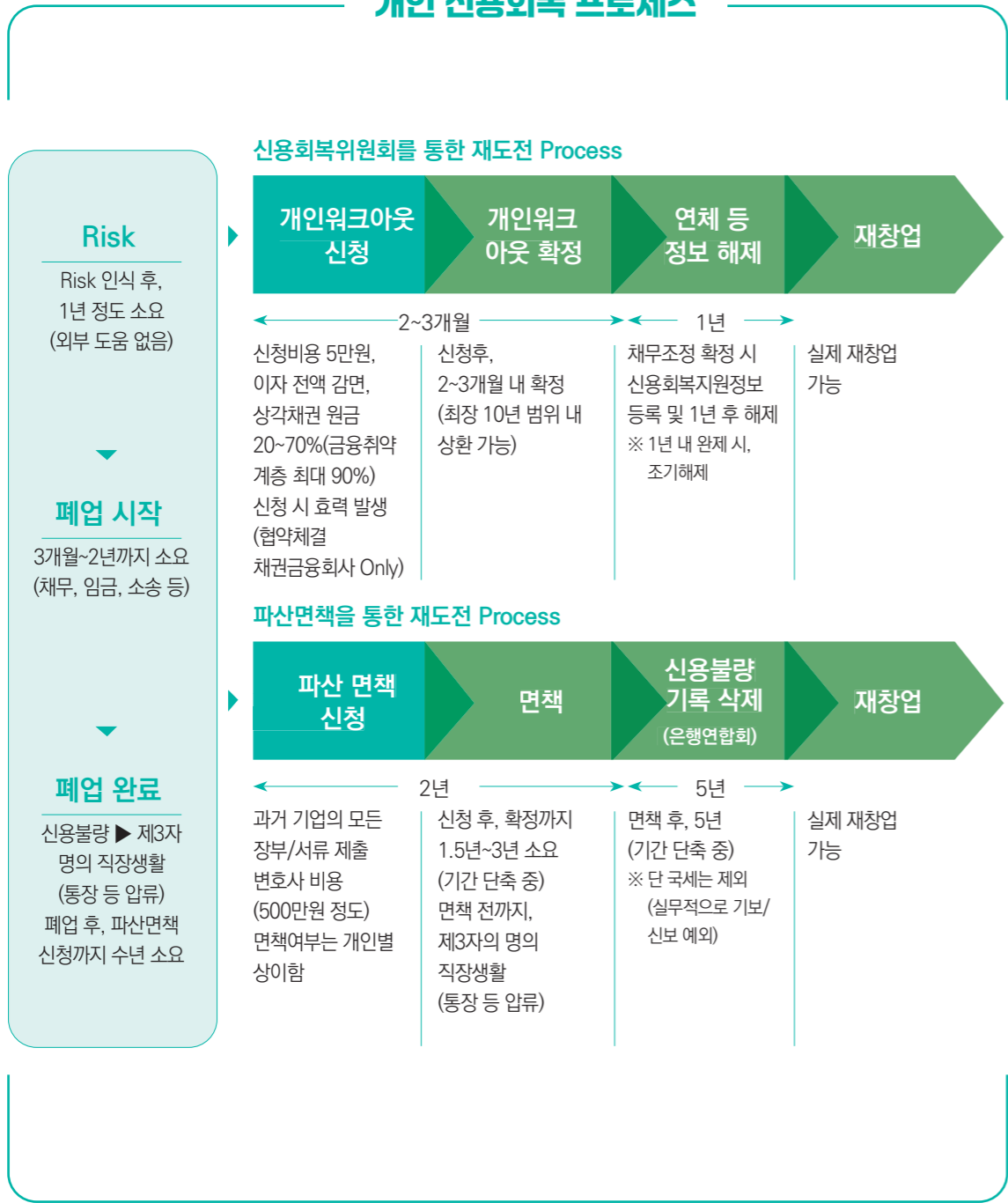
Chapter 3

1. 신용회복 절차
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3. 개인워크아웃
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5. 개인 회생 제도
6. 개인 파산·면책 제도
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01 신용회복 절차

개인 신용회복 프로세스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인은

- ①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 채무상환 가능 완제 시 면책
- ②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채무상환 가능 및 완제 시 면책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 ③ **(개인파산·면책)**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vs 법원 개인 파산·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협약 가입된 금융회사 채무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분할상환
- (법원 개인 파산·면책) 채무자 현재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채무를 탕감함

➔ 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상담

- ① 맞춤형 재도전 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영위기가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가 심층 상담, 정책자금 융자 연계 지원
 - (신청·상담) ☎(서울)02-3211-5611(www.rechallenge.or.kr)
- ②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금액 30억 이하)
 - (신청·상담) ☎ 1600-5500(www.ccrs.or.kr)
- ③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 (신청·상담) ☎ 1588-3570(www.kamco.or.kr)
- ④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 회생·파산 대상자에게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
 -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이하 채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신청·상담) ☎ 국번없이 132(resu.klac.or.kr)

0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 시기	2002.10.01	2012.04.02	2004.09.23	1962.01.20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좌동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 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주채무 및 보증채무 30억	담보채무(15억) 무담보채무(10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90일 이상 연체자	좌동	계속적 소득이 있는 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 영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좌동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 조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 (금융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금융취약 계층 최대 50%)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중진공, 신·기보의 상각 채권 또는 대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채권, 동기관이 캠프에 양도한 채권의 경우 75%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 	3년 이내 채무변제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변제 완료 시 면책	좌동	변제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 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좌동	변제계획 인가 시	면책 결정 시
한국 신용 정보원 공공 정보 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신용회복지원 관련 공공정보 공유 제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 채무변제 완료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확정시,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시 공공정보 삭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03 개인워크아웃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

➔ 지원내용

① 담보 채무자(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 한함)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인하)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 인하(최고 10%, 최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상환기간연장) 최장 35년

② 무담보 채무자

-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금융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금융취약계층 최대 50%) 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유예이자 연 2.0% 범위 내
- (상환기간연장) 최장 10년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청
(☎: 1600-5500, 홈페이지: www.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 설립목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 주요 업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신용교육 등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

● 채무상담 및 조정

-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재창업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병행 지원

0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사업실패로 채권금융회사에 3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기업인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재기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채무 과다 등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대표이사, 경영실권자)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예정자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경과기간이 7년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예정인 경우 자금지원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하여야 함

-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상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채무

* 협약가입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

➔ 채무조정

-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 중진공 및 신·기보의 상각채권 또는 대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채권, 동 기관이 캠프에 양도한 채권의 경우 최대 75% 감면
- (상환유예)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시 최장 3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5년
- (상환기간 연장)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시 최장 8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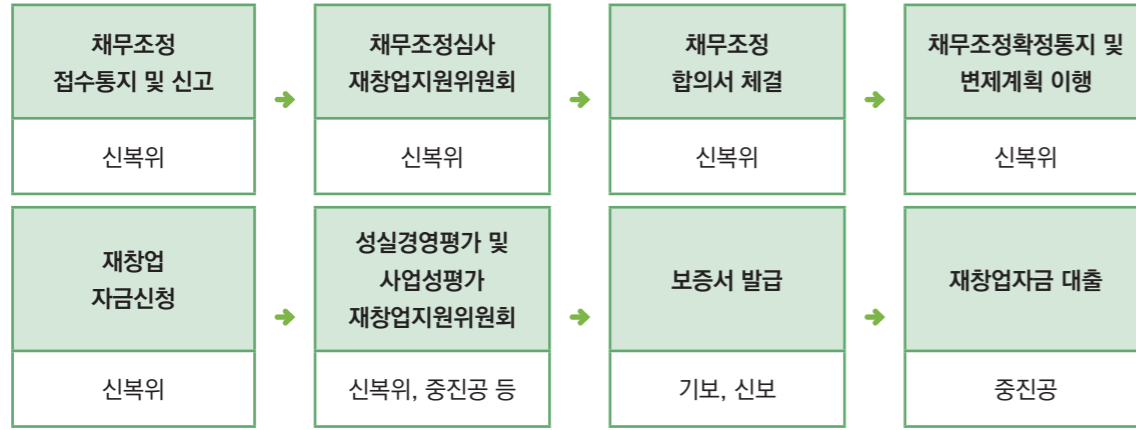
➔ 재창업자금 지원

- (지원내용)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
-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 상환조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취급기준에 따름

05 개인 회생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제도

➔ 지원절차



꼭 알아두세요!

-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는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록 시 해제되나, 신용거래는 제한적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용자를 지원받은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신청 및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청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채무(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채무자

➔ 신청비용

신청서 인지대(3만원), 금지명령 신청인지대(2천원),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소요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 소요기간

평균 4개월 ~ 6개월 소요

➔ 개인회생 효력

-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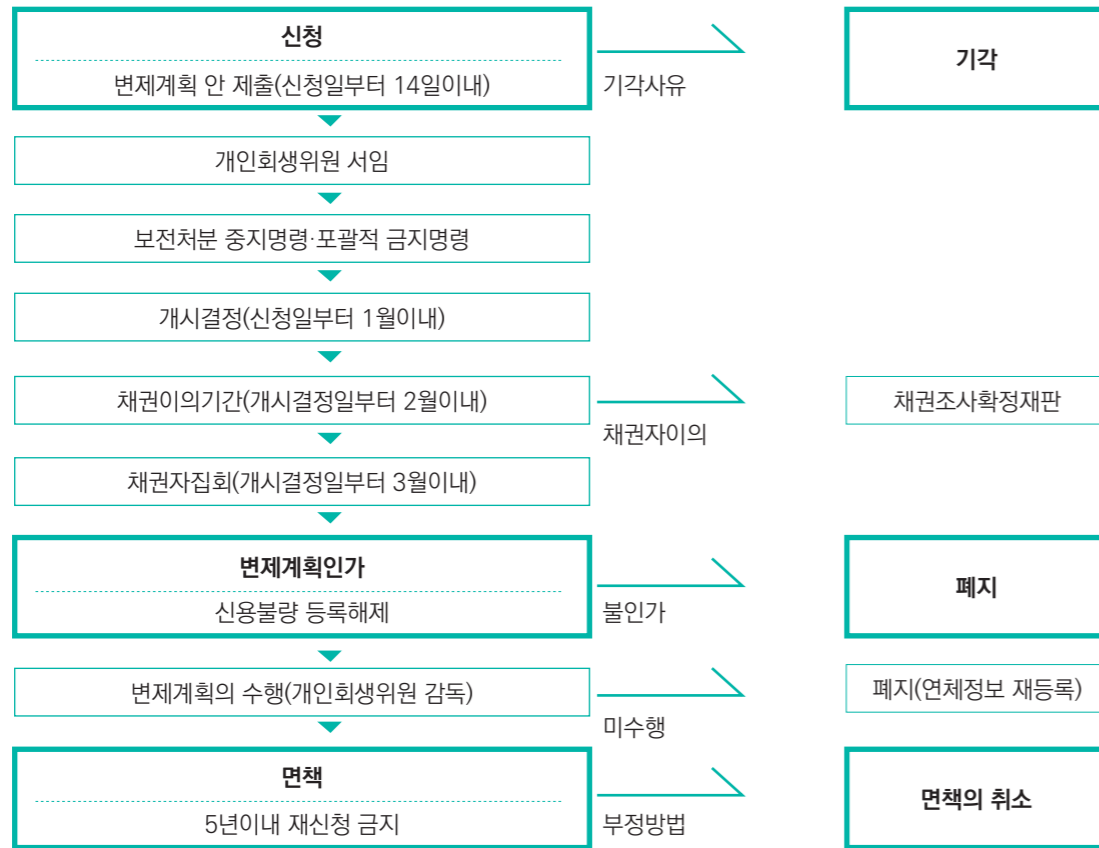
- 채무자, 신청취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술서 등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06 개인 파산·면책 제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총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갚아주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 면책하는 법적 제도



-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의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개인회생 인가 중”이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인가일로부터 5년경과 시 “개인회생 인가 중” 공공정보는 삭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 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 신청방법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신청대상

-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150%보다 소득이 적은 개인 채무자

➔ 신청비용

신청서 인지대(2천원),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소요

➔ 개인 파산·면책 효력

- 보유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고, 면책 결정된 채무는 변제 책임이 소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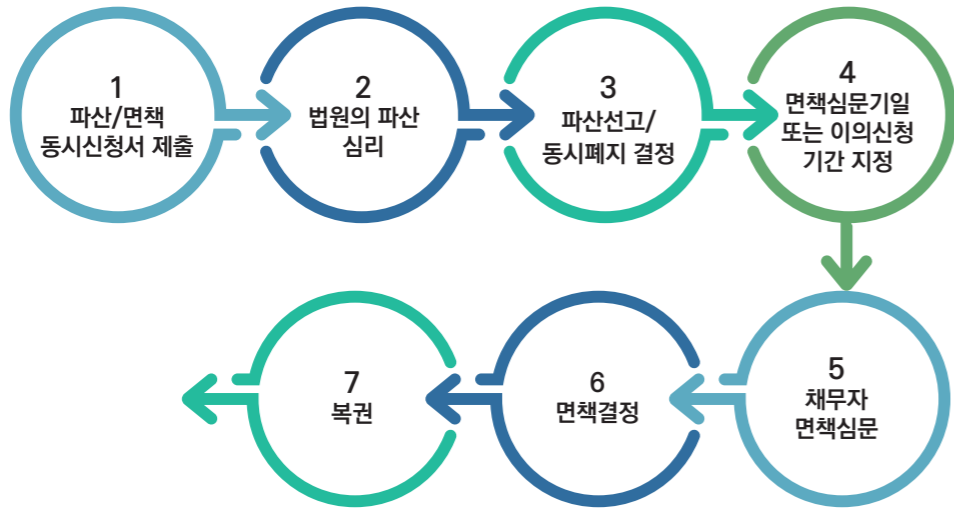
➔ 신청방법

- 개인 채무자는 신청서(파산·면책 동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 개인 파산·면책 절차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포함)이 5억원 미만이면 간이파산 가능



0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금융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 신청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민간금융회사 및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

➔ 지원내용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부담 완화 지원

- 채무자 신청이 있을 경우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
-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30~60%*까지 차등 감면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인수로 안분한 금액을 부담

대상자 구분	지원내용	공통
주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30~60%) 적용 * 소득,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재산 여부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5년)
연대보증인	채무관계자수 안분 후, 채무감면율(30~60%)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자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자* 개인상황에 따라 60~90% 감면 * 중소기업인(70%),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 사업절차

- 1 채권 인수 → 2 채무조정제도 안내 → 3 부담액 산정 및 약정 체결 → 4 채무상환

➔ 신청 및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1588-3570)

➔ 개인 파산·면책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면책결정시 기존의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면책결정자”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
- 공적·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시 노출

➔ 신청방법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지역본부명	소재지	담당 전화번호
서울동부지역본부	(062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퍼스재타워	02-3420-5000
서울서부지역본부	(062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퍼스재타워	02-3420-5000
부산지역본부	(48509) 부산 남구 수영로 350	051-794-4600
경기지역본부	(16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031-270-4500
인천지역본부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032-509-1500
광주전남지역본부	(61934)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062-231-3000
대전충남지역본부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퍼스캐피탈타워	042-601-5000
대구경북지역본부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053-760-5000
전북지역본부	(549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빌딩	063-230-1710
경남지역본부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055-269-8000
강원지역본부	(2555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51	033-640-3400
충북지역본부	(2837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043-279-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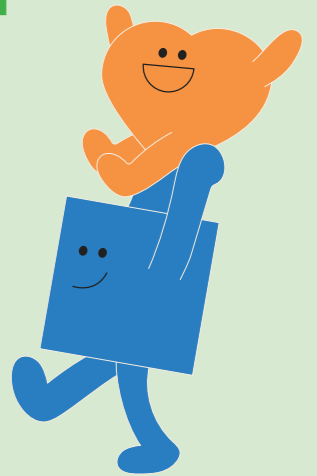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Chapter 4

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2.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0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 지원 요건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ㄱ.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5억원
 - 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5억원
 - ㄷ.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금액 제한 없음
 - 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15억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ㄱ.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 ㄴ.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 ㄷ.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ㄹ.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②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납부고지의 유예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02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자에 대해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 제한 및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 적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결정, 법원 개인회생 인가·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 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인

➔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 재기사업자(중진공 재창업자금을 받은 자, 신보·기보의 재기지원사업자 등)의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 및 개인 신용등급 반영을 제한

* 공유제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확정,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확정 정보 등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재창업자금 용자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유제한



꼭 알아두세요!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를 공유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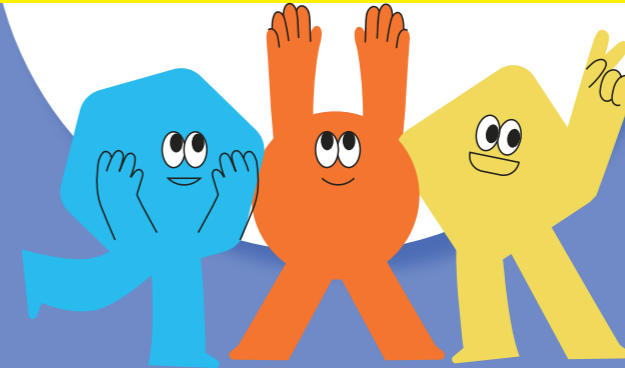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를 공유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 9628)

PART. 2 경영위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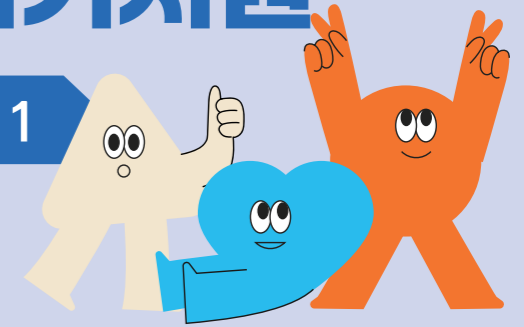


Chapter 01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Chapter 02 중소기업 사업정리

경영위기 중소기업재기지원

Chapter 1



1. 구조개선전용자금
2.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3.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부실징후기업 금융지원
4.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5.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유동화]프로그램(기업키움이 프로그램)
6.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7. 중소기업 워크아웃
8. 워크아웃 컨설팅
9. 기업회생 제도
10.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11.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12. 신용보증기금 빌드업 프로그램
13.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01 구조개선전용자금

위기징후 중소기업에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악화 전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신청대상

아래의 유형(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 지원절차: 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구조개선 전용자금 우대사항

- 융자계획 공고 III.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우량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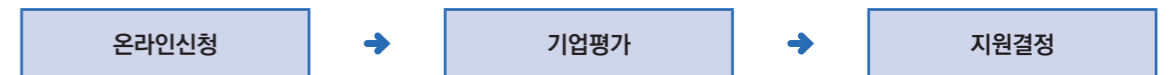
➔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대출 조건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한도	시설	-
	운전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02 선제적 자률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률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 신청대상

협약금융기관* 및 중진공 대출(보증) 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11개)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하나은행, 부산은행

정책금융기관(2개) :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당해 협약 금융기관 신규대출·보증(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

자격요건

- ① ▶ 재무지표 악화 또는 열위 기업(아래 가~사 중 1개 이상 해당)
 - 가. 최근 결산년도의 직전년 또는 직전전년 대비 최근 결산년 재무지표 10% 이상 감소
 - 대상 재무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 나. 최근 결산년도 이자보상비율 1.5배 미만
 - 다.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이자보상비율 1 미만
 - 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 마. 최근 결산년도 재무지표 산업평균 70% 미만
 - 대상 재무지표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 바. 최근 결산년도 재무지표 산업평균 150% 초과
 - 대상 재무지표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 사. 그 외 객관적으로 경영애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② ▶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신용정보법」 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용정보회사: ①한국평가데이터, ②NICE평가정보, ③이크레더블, ④SCI평가정보, ⑤나이스디앤비, ⑥테크핀레이팅스, ⑦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③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미해당
- ④ ▶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 ⑤ ▶ 기업 소유 사업장 및 대표이사(실질기업주 포함) 소유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사실 없음
- ⑥ ▶ 기업 및 대표이사(실질기업주 포함)의 세금 체납사실 없음
- ⑦ ▶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 ⑧ ▶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외감기업)
- ⑨ ▶ 그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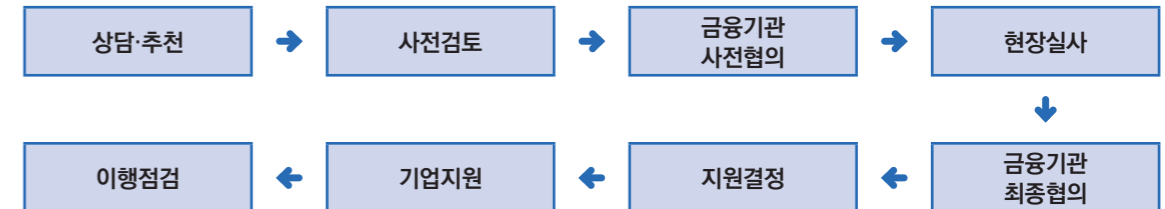
➔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사업절차



➔ 신청방법

협약 금융기관, 중진공(지역본·지부) 등 기업 상담·추천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자금 상담)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03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부실징후기업 금융지원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부실징후기업에게
캠코가 자금대여·경영컨설팅·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기업(종결 기업 포함) 중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C·D등급) 및 워크아웃기업(종결 기업 포함) 중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지원불가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 영위 기업, 소상공인(제조업은 가능), 인가 후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기업(유예분 제외),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상시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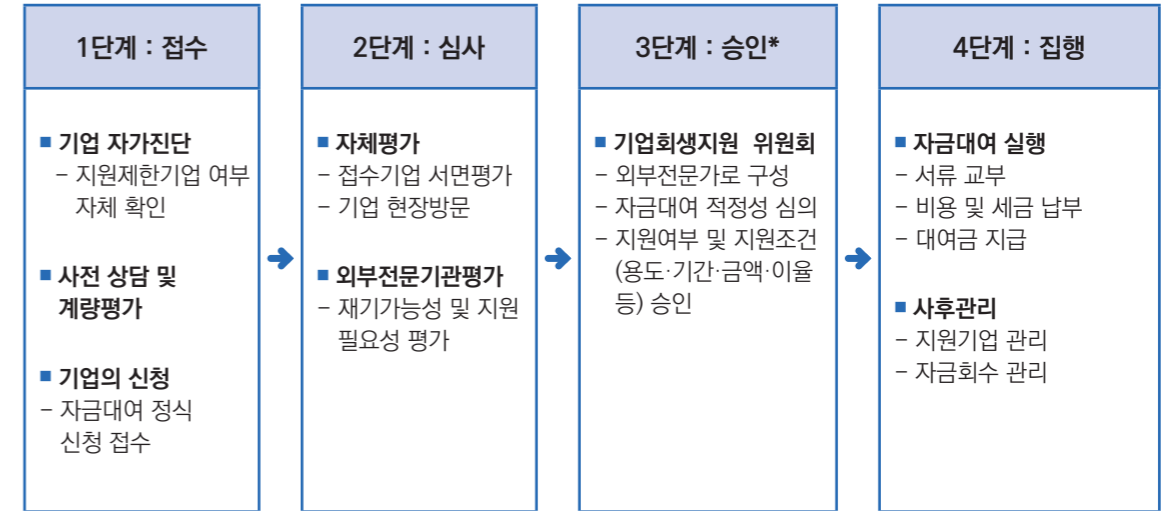
기준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2025년	자금대여	51건	932.98억원
총 누계		243건	3,132.18억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원재료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종업원 급여 등 ■ (시설자금) 기계설비 구입 등 ■ (대환자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담보권 대환
대여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대환자금 한도 별도)
대여기간	■ 최장 5년(연장기간 포함) 이내(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없을 시 대여금 잔액 분할상환조건으로 최대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대여이율	■ 4~5% 수준 (.3월 기준, 매달 변동)
추가지원	■ 컨설팅(민간전문가 매칭), 지급보증(회생종결 기업 대상) 등

※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진공의 자금대여 및 서울보증보험의 우대보증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사업절차



* 5억 이하 소액 지원의 경우 간소화된 FAST-TRACK 절차로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온기업(<https://oncorp.or.kr>)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04-1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직접)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의 영업핵심자산을 공사가 매입한 후 재임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영정상화 이후 우선 매수할 기회를 부여

➔ 신청대상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동성 위기기업

- (자격요건) 지원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고, 매각대상 부동산에 매입제한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 (지원방식) 금융지원(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 세금감면, 정책자금, 컨설팅 등 연계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재무 및 담보 현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기간) 최대 10년까지(기본 5년으로, 5년 범위 내 연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요율) 연 6% 수준(지원시점 기준금리 및 기업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절차

접수 후 지원까지 평균 3개월 소요

지원신청	인수 검토	위원회 심의	계약 체결	우선매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청 - 온기업 접수 ■ 협업기관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검토 및 현장 실사 ■ 외부평가 - 경영정상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인수 심의위원회 - 지원기업선정, 인수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 임대차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가격 산정 ■ 기업자산 재매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온기업 <https://oncorp.kamco.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S&LB인수팀 (☎ 051-794-3844~5)

04-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신탁)

사업재편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방식 등을 활용하여 유동성 지원

➔ 신청대상

산업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 (지원방식) 금융지원(사업재편 등을 위한 유동성 공급)
- (지원규모) 기업별 재무 및 담보 현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기간) 최대 8년까지(기본 5년으로, 3년 범위 내 연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요율) 연 5% 수준(지원시점 기준금리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절차

접수 후 지원까지 평균 3개월 소요

지원신청	내부 검토	인수 검토	위원회 심의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청 - 온기업 접수 ■ 협업기관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검토 및 타당성 평가 ■ 현장방문 및 경영진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상화 평가 등 ■ 자산가치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인수 심의위원회 - 지원기업선정, 지원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수익권 매매계약 체결(대금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온기업 <https://oncorp.kamco.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S&LB인수팀 (☎ 051-794-4543)

04-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동산)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및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지원

➔ 신청대상

기계·기구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또는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기타 대출 이용 기업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 (지원방식) 금융지원(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0억원
- (지원기간) 최대 10년까지(기본 5년으로, 5년 범위 내 연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요율) 연 3% 수준(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절차

접수 후 지원까지 평균 2개월 소요

지원신청	인수 검토	위원회 심의	계약 체결	우선매수권	재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상담 후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심사 후 후보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 상환가능성 평가 ■ 담보물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인수 심의위원회 - 지원기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매매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산 재매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온기업 <https://oncorp.kamco.or.kr>)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S&LB인수팀 (☎ 051-794-3621)

05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유동화) 프로그램(기업키움이 프로그램)

일시적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청대상

- 대상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법인기업
- 대상자산: 법인 소유의 공장, 사옥, 창고 등 핵심 영업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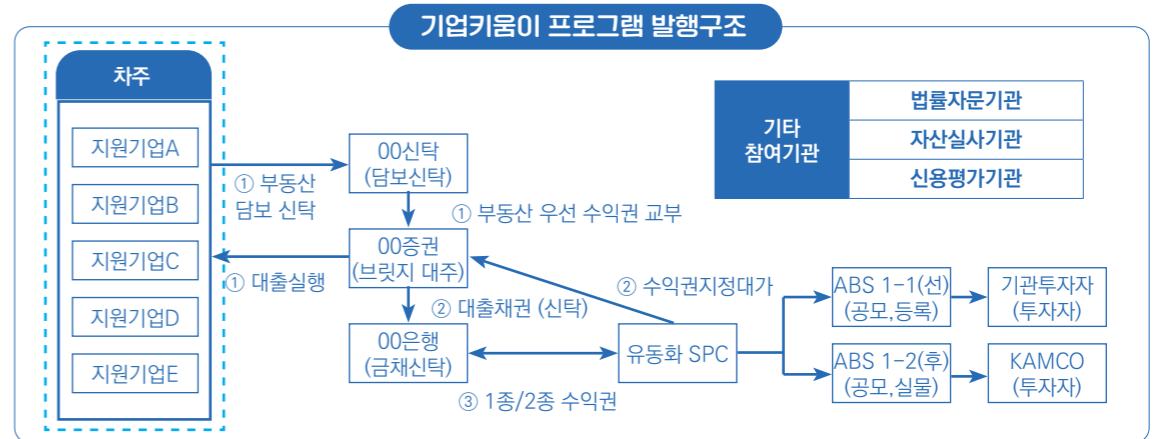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대출기간: 3년 만기 일시상환 ※결격 사유 없을 시 최장 8년(연장기간 포함) 이내 2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 5% 내외('26.4월 기준) ※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한도(LTV): 70~80% 수준 ※ 기업별 재무 및 담보 현황 등에 따라 결정

* 프로그램 구조

기업 보유자산을 담보신탁하고 관련 금융기관 여신을 브릿지 대출을 통해 금전채권신탁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공모 발행하여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온기업 <https://oncorp.kamco.or.kr>)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구조화금융인수팀 (☎ 051-794-4511~4)

06 진로제시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자금 및 기업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청대상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재창업자금* 최초로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재창업자금 직대(신용) 1억원 이상
- 기초진로제시 결과 '사업정리'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및 사업정리 희망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기업 등

➔ 컨설팅 내용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회생인가 가능성 등 심층 분석

➔ 지원내용

240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분담금 1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 시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6

<참고> 기업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업파산
	계속가치 > 청산가치	계속가치 > 청산가치	계속가치 < 청산가치
대상	■ 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경영위기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대상 채무	■ 채권은행협의회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 기업의 모든 채무	■ 기업의 모든 채무
내용	■ 경영애로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 정상화 계획 실행	■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영애로 기업이 회생계획 대로 경영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면책	■ 구조조정에 실패한 회생불능 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하고, 해산하여 소멸
감독 주체	채권보유 금융기관 (사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채무 조정	■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이자감면 및 출자전환 등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	■ 기업의 채무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 환, 나머지는 감면 혹은 출자전환	■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장점	■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부족 해결 ■ 기업회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 정상적인 영업가능 ■ 강제 집행 등 무분별한 개별적 집행 중지가능	■ 채권자·채무자 조세부담 경감 ■ 회생절차에 비해 간편
단점	■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경영권 포기 또는 간섭 ■ 금융기관 이외 상거래 채무 등은 조정 불가능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행정청의 영업제제 및 거래단절 가능성 ■ 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 법인 계속경영 불가 (법인의 해산) ■ 법인기업 해산으로 주 채무가 면제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소요 기간	채무 변제 시까지	회생계획기간 (통상10년)	통상 1~2년

07 중소기업 워크아웃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전제로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 신청대상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실시하는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 기업

➔ 신청기간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기간 및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따름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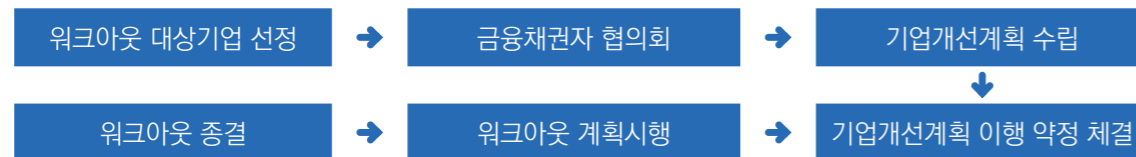
- 금융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

* 민간은행, 중진공, 신·기보, 무역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非금융기관도 참여)

➔ 신청방법

대표자가 주채권은행 거래 영업점에 상담 후, 신청

➔ 사업절차



문의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02-3145-5114)

08 워크아웃컨설팅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은행 워크아웃 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구조개선을 지원

➔ 신청대상

- 제1차 워크아웃 협의회 결의로 채권행사의 유예가 결정된 워크아웃 최초기업
- 이미 추진 중인 관리절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워크아웃 연장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근거한 은행권 워크아웃

➔ 컨설팅 내용

- 재무상태 실사
- 경영성과 진단
- 구조조정 실행방안 수립
- 후속절차자문

➔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업분담금 10%, 3천만원 초과금액,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 시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09 기업 회생 제도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기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전환 등으로 기업회생을 돕는 법적 제도

➔ 신청대상

- 채무를 변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채무가 있는 기업(법인, 개인 포함)
* (참고) 채무기업이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비용

- 부채총액 및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채무기업은 법원 예납비용(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등)으로 최소 1,800만원 이상 소요
* 채무기업의 부채 및 자산총액, 채권자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 소요기간

6~8 개월 소요

➔ 기업 회생계획안 인가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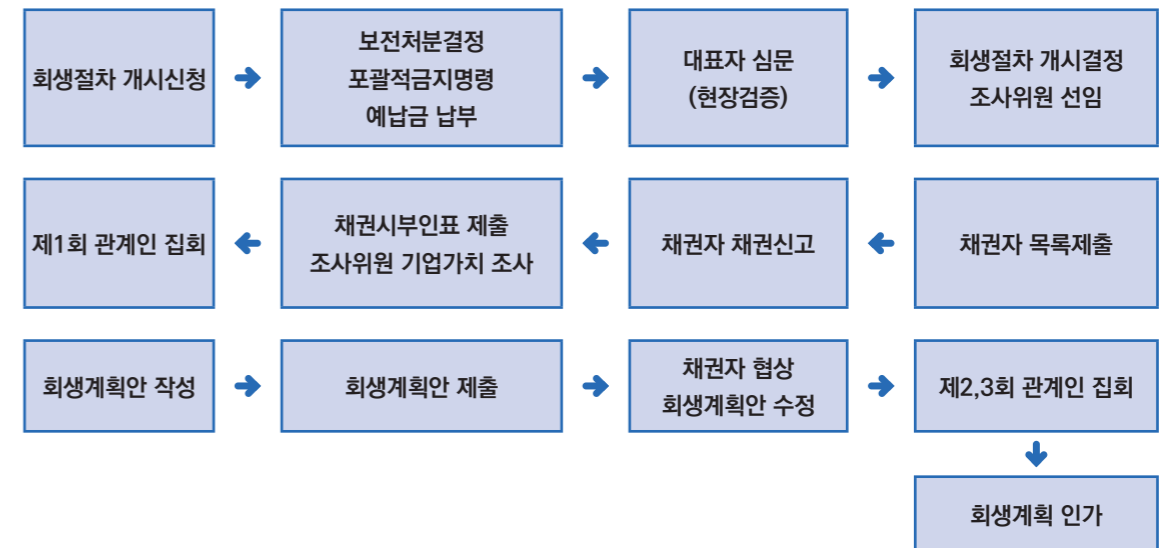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전환 후 일부 현금 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 신청절차



➔ 기업회생 제도 장·단점

- **(장점)**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 (사채포함)
- **(단점)** 불리한 공공정보 등재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하고, 거래처와 거래관계 단절 가능성 존재
※ 꼭 알아두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수도권, 강원) ☎ 02-2130-1452 (그 외) ☎ 055-751-9624, 9627

10 간이 회생 제도

부채가 50억원 미만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인가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법적 제도

➔ 신청대상

부채가 50억원 미만인 법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

* 간이회생 신청을 하는 때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신청비용

인지대, 예납비 등 약 1,000만원이내

➔ 소요기간

4 ~ 6개월 소요

➔ 간이회생 계획 인가 효력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전환 후 일부 현금 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 꼭 알아두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수도권, 강원) ☎ 02-2130-1452 (그 외) ☎ 055-751-9624, 9627

11 회생컨설팅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신청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 업무 제휴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법원이추천한 기업
 - * ARS(자율구조조정지원) : 회생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 Pre-ARS : 회생신청 전 사전구조조정 제도
 -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구조조정 제도
-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 신용채무 합 10억원 이하 및 담보채무 합 15억원 이하인 자
 - **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하는 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가능)

➔ 컨설팅 내용

- | | |
|----------------|-------------|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 채권목록 작성 | ■ 시부인표 작성 |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

➔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업분담금 10%, 3천만원 초과금액,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 시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수도권, 강원) ☎ 02-2130-1452 (그 외) ☎ 055-751-9624, 9627

12 신용보증기금 빌드업 프로그램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부실징후 우려기업의 신속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

➔ 신청대상

일시적 성장성 또는 경쟁력 저하 기업,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상시

➔ 지원규모

최대 50억원

➔ 지원내용

금융지원(신규보증, 기보증만기연장 등), 비금융지원(컨설팅 등)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신보 전국 8개 기업밸류업센터를 통해 신청

13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지표 취약 등 복합적 경영위기 기업의 부실방지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

➔ 신청대상

재무취약지표를 보유한 경영위기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 신청기간

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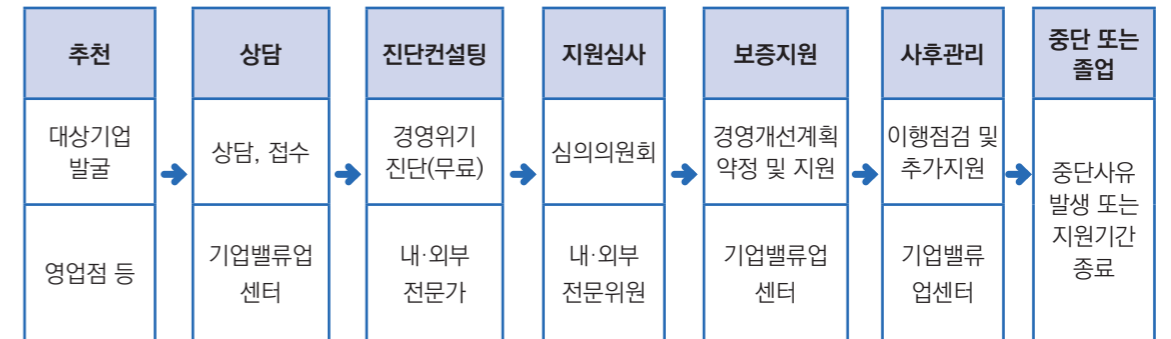
➔ 지원규모

최대 50억원

➔ 지원내용

금융지원(신규보증, 기보증만기연장 등), 비금융지원(컨설팅 등)

➔ 사업절차



➔ 신청방법

신보 전국 8개 기업밸류업센터를 통해 신청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신용보증기금 기업밸류업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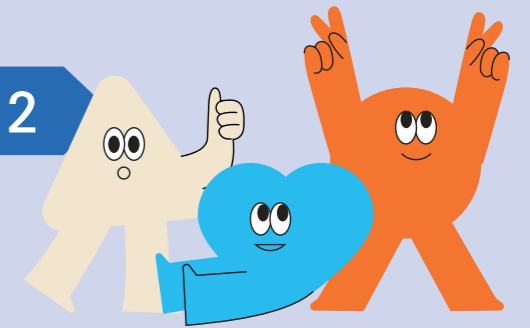
지역본부명	소재지	담당 전화번호
서부기업밸류업센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10층(봉천동, 대교타워)	02-2003-8991
동부기업밸류업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15층(사당동, 골든시네마타워)	02-2182-0131
경기기업밸류업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 1층(인계동, 신용보증기금)	031-8012-9812
인천기업밸류업센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706호(송도동, 센트로드)	032-880-3041
대전기업밸류업센터	대전 동구 대전로 853, 1층(정동)	042-250-2046
광주기업밸류업센터	광주 동구 제봉로 218, 3층(대인동, 신용보증기금)	062-607-9294
대구기업밸류업센터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265, 7층(대흥동, 수성정문타워)	053-430-0577
부산기업밸류업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10층(우동,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051-750-5360



중소기업 사업정리



Chapter 2



1. 중소기업 사업정리
2. 사업정리 유의사항
3. 사업정리 컨설팅
4. 법인기업 파산 제도
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01 중소기업 사업정리

➔ 사업정리란?

- (정의) 중소기업 폐업 시 필요한 행정처리* 및 잔존요소**를 처리하는 것
 - * 신고(폐업, 부가세, 법인세 등),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탈퇴 등
 - ** 채무(상거래, 금융, 조세 등), 유효자산(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유형) M&A와 같은 양도형 사업정리와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같은 해체형 사업정리가 있음

유형	제반절차	비고
양도형 사업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자산매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나 자산이 환가 가능한 가치가 있을 때 ▪ 사업정리 초기에 시도
해체형 사업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국세청) ▪ 청산 혹은 파산 절차 후 법인해산 등기(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형 사업정리가 불가능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절차) 자산 > 부채 - (파산절차) 자산 < 부채

➔ 사업정리 애로요인

- (소요기간 장기화) 회사정리 기간의 장기화(평균 8.6개월)로 인해 재도전까지 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문가) 회사정리 과정에서 이용한 자문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만족도가 낮은 상태
 - * 회사정리과정에서 각종 자문, 파산비용 등 평균 6천만원 소요

➔ 사업정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사업정리 전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은 필수 !!!

사업정리 전 세무, 노무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정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향후 재도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뿐 아니라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 활용

② 어렵다고 사업정리만이 최선일까요?

기업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나 구조개선을 통한 위기 극복도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활용

➔ 폐업 시 행정처리

① 폐업 신고

- 면허 또는 허가증 있는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②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누락 시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③ 법인세(소득세) 신고

- 매출액 추계로 과세하여 소득세 과세될 수 있어, 누락 시 無신고가산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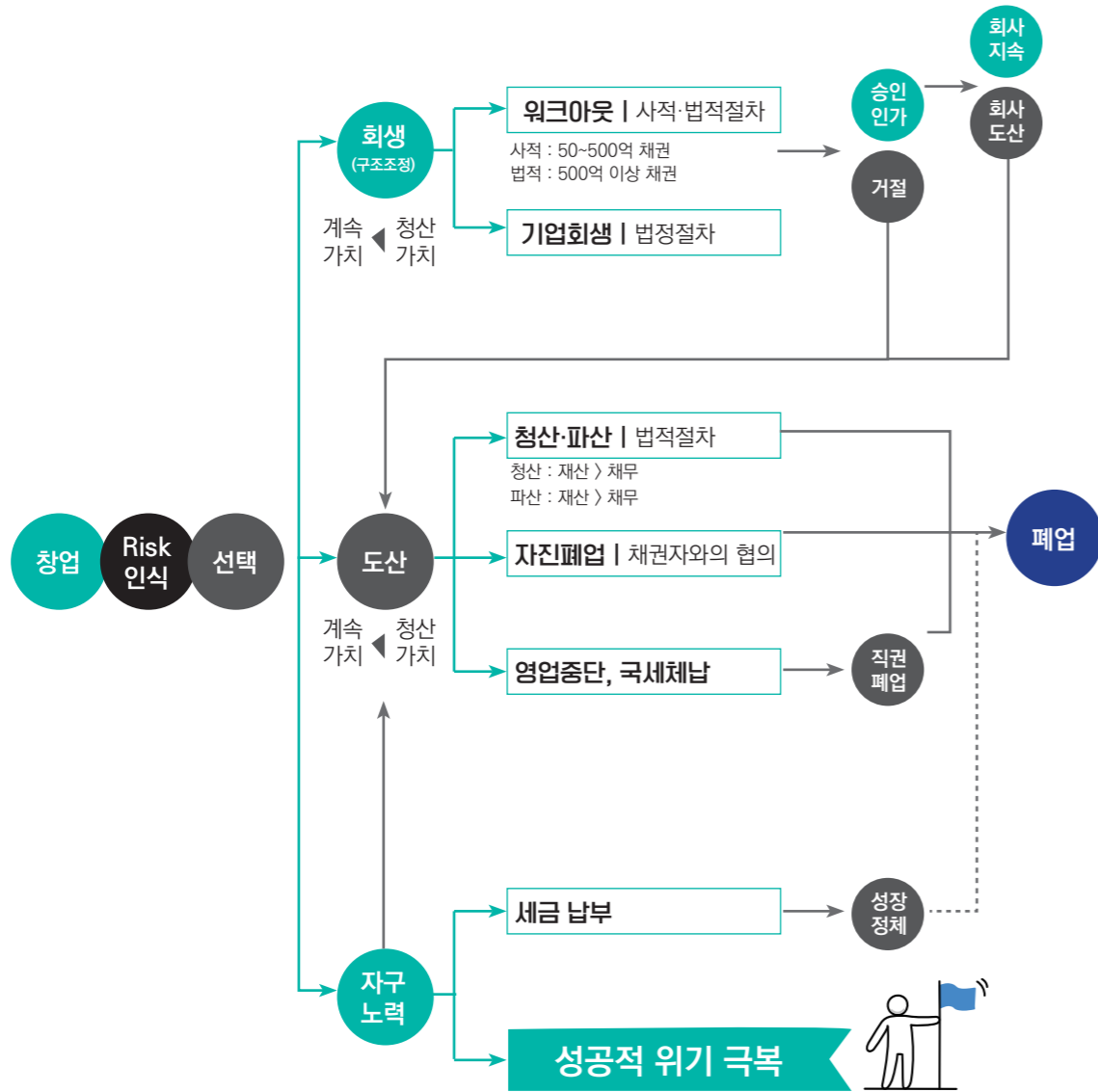
④ 지급명세서 제출

- 누락 시 지급명세서와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함

⑤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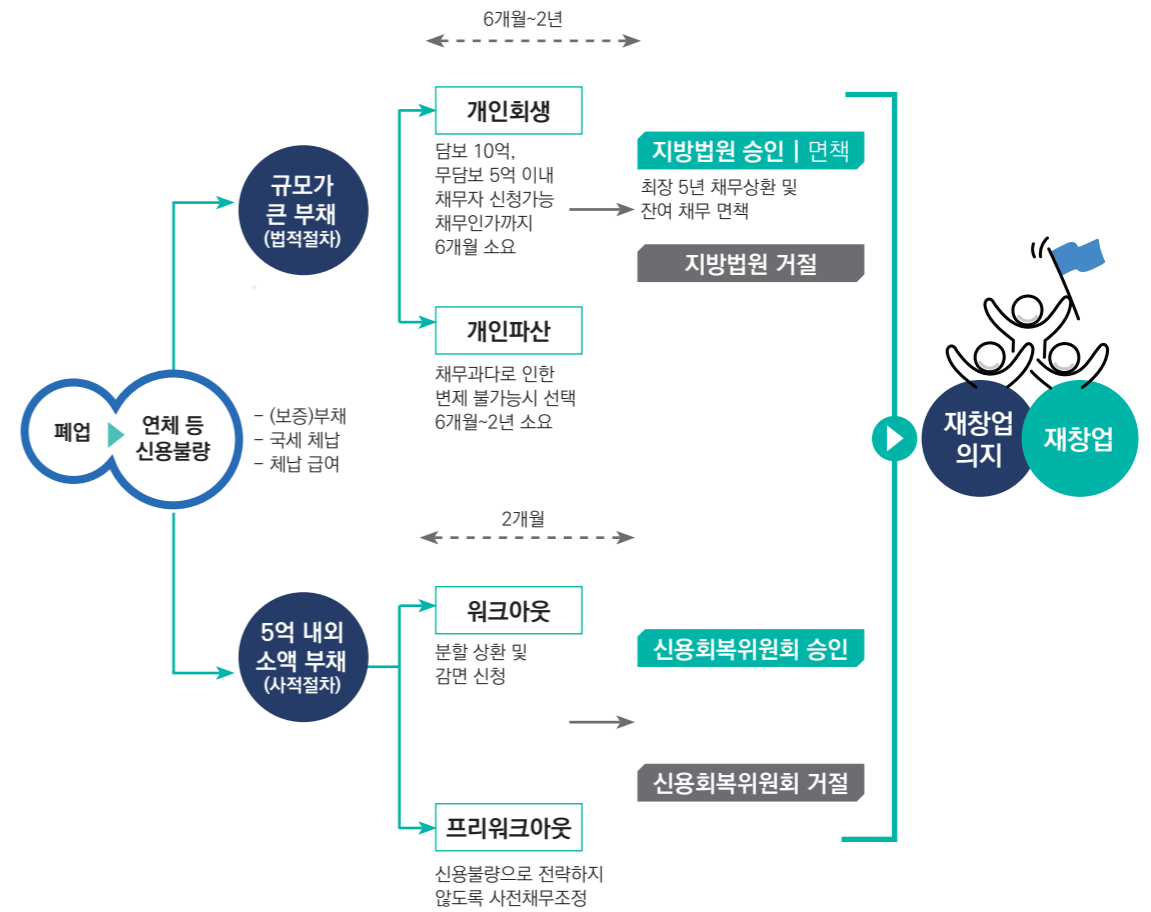
- 누락 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대 보험을 계속 부담하게 됨

<참고> 법인 폐업 프로세스



Risk : 매출급락, 시장불안, 은행독촉, 부도 경고 등

<참고> 개인 재도전 프로세스



-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결정 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DATA관리
- 모든 면책에서 조세는 제외

02 사업정리 유의사항

➔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도전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정리 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용

① 사업정리 전에 경영위기에 닥쳤을 때 국세 징수유예 신청

- 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세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
- 그러나, 국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독촉기간(최대 1개월)내 체납상태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승인도 까다롭고, 증가산금만 면제됨

② 국세의 부과와 소멸

- 법원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국세는 감면이 안 되고, 체납세금에 대해 가산금 3%와 함께 매월 1.2%씩 연 14.4%로 최대 5년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
* (예시) 5천만원 5년 체납 시 가산금 3,750만원(5,000*75%)
** '19년부터 체납가산금은 1개월 경과 시 매월 0.75%(연 9.0%)로 인하
- 체납세금이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경과되면 징수할 수 없으나, 세무당국에서 5년 이내에 재산 압류를 하거나 독촉할 경우에는 국세 소멸기간이 다시 시작하며, 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는 국세 소멸 시효는 중단됨

③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 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의 주주 본인과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

④ 소득세(법인세)의 신고 누락 시 문제

-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할 경우,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부과
- 폐업 시에도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신고기한 내에 매출액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폐업 청산 시 부동산 경매

- 파산으로 인한 양도 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경매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빚을 정리한 후 본인에게 돌아온 금액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⑥ 대표이사 가지급금

-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법인에 상환해야함
*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어 회계상 일시적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계정

⑦ 폐업 시 재고자산

- 폐업 시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이나 집기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함
- 회계장부상 잔존자산을 폐기하거나 매각 손실 처리하여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세무·법률상담) ☎ 02-2130-1452 (사업정리컨설팅) ☎ 055-751-9624, 9627

03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에 폐업·파산 등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지원

➔ 신청대상

- 사업정리 희망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기업

➔ 컨설팅 내용

- **사업정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각종신고 절차 안내 및 토지·건물 등 재고물품 처분 방법
- **재무·세무 컨설팅**
 - 부가세·법인세 등 행정절차 및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방법
- **법무, 노무 컨설팅 및 계획 제시**
 - 채무 및 신용회복 방법,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계획 제공

➔ 지원내용

최대 360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분담금 1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시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04 법인가업 파산 제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법적 제도

➔ 신청대상

-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가업의 이사 또는 청산인
* 법인가업의 모든 이사가 아닌 일부 이사만 파산 신청할 경우 파산원인의 사실을 소명해야 함

➔ 신청비용

- 부채총액 5억원 미만 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500만원 소요
* 채무기업의 부채 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

➔ 소요기간

- 파산신청 ~ 파산선고까지 약 1개월, 파산선고 ~ 종결까지 약 1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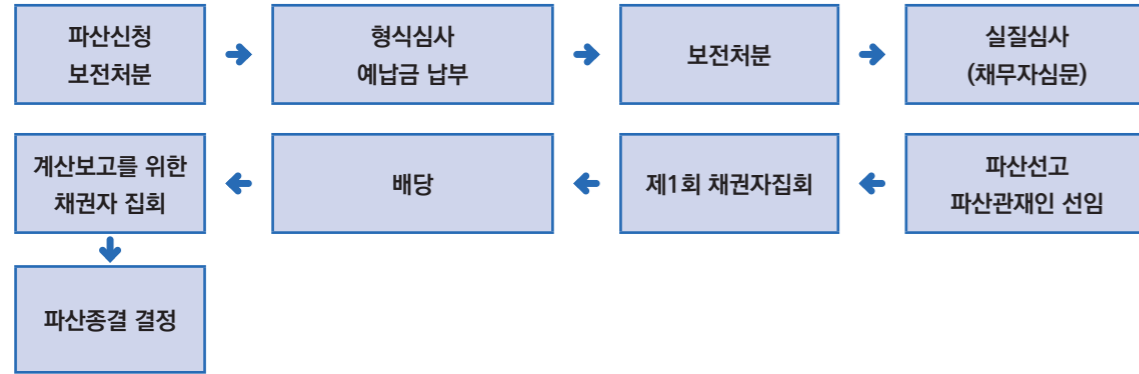
➔ 파산 효력

- 채무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매각·배당
- 법인은 파산·종결하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함

➔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 지원절차



-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극히 적어 조세, 임금, 파산절차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

➔ 기업 파산 시 유의할 사항

-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함께 법인 해산으로 동일 법인으로 계속경영 불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수도권, 강원) ☎ 02-2130-1452 (그 외) ☎ 055-751-9624, 9627

05 중소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전환 및 휴·폐업 시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신청대상

사업전환·희생·재창업·휴·폐업기업 등 유휴자산*의 판매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 유휴자산 : 중고 기계설비, 입찰경매 및 이전·대여 매물, 유통매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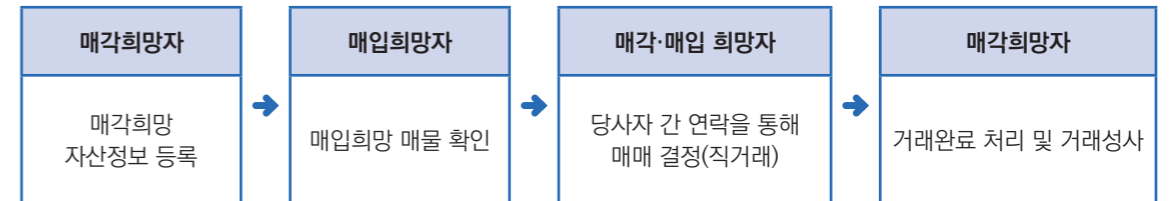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내용

- 유휴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 직거래를 통한 매입자 간 자율 거래 진행
- 신청을 통해 매각 희망 자산을 신문지면 상에 무료 홍보

사업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거래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래는 당사자 간 책임하에 이루어짐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중개장터 플랫폼

(www.joonggomall.or.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055-751-9705)



2026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발행일 2026년 5월

펴낸곳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 화 055-751-9628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www.rechallenge.or.kr

편집·디자인·인쇄 새론앞길 T.02-6213-2777

※ 이책의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